



제439회 국회(정기회)
제1차 국토교통위원회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《기본계획 변경 요청 및 반영 여부 통보 절차 신설》
■ 박지원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20028호)

2026. 9.

국 토 교 통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이복우

목 차

I . 박지원의원 대표발의(제2220028호)	1
1. 제안경위	1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3. 검토의견	3
가. 기본계획 변경 요청 및 반영 여부 통보 절차 신설(안 제6조제4 항부터 제6항까지)	3

I. 박지원의원 대표발의(제2220028호)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박지원의원 등 10인

나. 발 의 일 : 2026. 7. 20.

다. 회 부 일 : 2026. 7. 23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·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장의 검토·회신 의무가 없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소관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기본계획의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환경 및 개발수요의 변화에 따른 관계기관의 계획 변경 수요가 적시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와 사유를 통보하

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
려는 것임(안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).

3. 검토의견

가. 기본계획 변경 요청 및 반영 여부 통보 절차 신설(안 제6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)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③ (생 략) ④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. <신 설> <신 설>	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적·경제적 여건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⑤ 새만금청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와 사유를 요청을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⑥ 제4항에 따른 요청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사회적·경제적 여건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
경우 새만금청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새만금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와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).

현행법 제6조는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⁾.

또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고,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,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⁾.

새만금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·김제시·부안군 일원의 약 409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산업·도시·관광·농생명·환경·에너지

1)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(이하 “새만금청장”이라 한다)은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사회적·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3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위원회(이하 “새만금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2)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④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.

및 광역교통시설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, 기본계획은 새만금사업의 중장기 개발방향을 제시하고,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등 하위계획의 수립 기준이 되는 종합계획으로 기능하고 있음.

새만금 기본계획은 사업 추진여건과 정책방향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으며³⁾, 최근에도 변화된 사업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한 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⁴⁾.

새만금사업은 새만금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통합·조정·집행하는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가운데, 관계 중앙행정기관,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할 시·군이 사업 추진 과정에 관계기관으로 참여하는 종합개발사업이므로, 기본계획과 개별 사업계획 간의 연계 및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·조정이 중요함.

이에 현행법은 새만금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·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두고,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

3) 새만금 기본계획은 2011년 3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(MP)이 최초 수립된 이후 2014년 9월, 2017년 12월 및 2021년 2월 각각 변경된 바 있음.

4)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8월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주민설명회·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같은 해 10월 새만금위원회 심의 후 확정할 계획임.

획의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없고 도지사의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·회신 절차가 없어 관계기관의 변경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변경 요청권을 새로 부여하고,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종전의 제안 대신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새만금청장에게 요청의 반영 여부와 사유를 일정 기간 내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.

【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표 】

구분	현행법	개정안
기본계획 관련 의견 제시 주체	전북특별자치도지사	
	-	<u>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</u>
의견 제시 방식	기본계획에 <u>관한 사항을 제안</u>	기본계획의 <u>변경 요청</u>
전북도지사의 사전협의	관할 지자체장과 협의	<u>미리</u>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
제안·요청에 대한 회신의무	-	<u>반영 여부와 사유를 통보</u>
회신기한	-	<u>30일 이내</u> (30일 범위에서 1회 연장)

※ 자료: 현행법 및 개정안 재구성

이는 관계기관이 계획 변경 수요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하고 그 반영 여부와 사유를 일정 기간 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

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.

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관계기관 협의·새만금위원회 심의⁵⁾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제안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, 개별 변경 요청마다 단기간 내 반영 여부를 판단·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계획의 종합적·일관적 관리와 새만금청장의 계획 수립·변경 권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.

또한 새만금개발청은 현행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제안권과 기본계획 수립·변경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통해서도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어 별도의 법 개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임.

다만, 개정안은 기본계획 변경 요청에 대한 관계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절차적 개선의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, 기본계획은 새만금청장이 사업 전반의 개발방향,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으로서, 개별적·일시적 수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기 어렵고 변경 여부의 판단에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5)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3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위원회(이하 “새만금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

문 의 처
02)6788-5579